



제 399 회 국 회 (임 시 회)
제 2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패럴림픽 회장 사업의 법적 권한 부여〉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116호)

2022.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법적 권한 부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2. 4. 6.

다. 회 부 일 : 2022.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 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회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의 주최로 4년마다 개최되는 신체 장애인의 국제경기대회인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회장을 활용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패럴림픽 회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패럴림픽 회장 사업의 법적 권한 부여(안 제2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 <신설> ○ 과태료 부과 대상(200만원 이하) - 직장체육지도자 미배정 -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없는 올림픽 회장 사업자 - <신설> -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의 수익금 미배분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의 체육진흥투표권 운영계획 등의 미제출	○ <u>패럴림픽 회장 사업</u> - <u>대한장애인체육회의 패럴림픽 회장 사업 승인권</u> - <u>사용료 부과</u> ○ 과태료 부과 대상(200만원 이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없는 패럴림픽 회장 사업자</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1조제1항). 2009.6.29.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회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올림픽과 동등한 대회로서 똑같이 4년마다 개최되는 패럴림픽(Paralympics)의 경우, 회장을 활용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등의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법 제34조), 비장애인 영역의 대한체육회와 대응된다고 볼 수 있음.

IPC(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s;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패럴림픽을 조직 및 대표하는 기구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NPC(National Paralympic Committees;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로 IPC에 소속되어 있음. 이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IPC의 모든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사용할 권리를 갖고,¹⁾ 이에 따른 패럴림픽 공식후원사와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IPC로부터 패럴림픽의 휘장 사용권을 부여받고 있음.²⁾

1) 「IPC HANDBOOK」 중 Chapter 2.9 - Bylaws - IP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Use of Paralympic Properties

3.5 Use of the Paralympic Properties by NPCs and Regional Organisations

Any use of the Paralympic properties mus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Paralympic Movement and must not detract from its dignity or reputation. NPCs shall have the right to use the Paralympic terminology and Paralympic Symbol in accordance with this Bylaw, which right is devolved from the IPC as the absolute owner of the right and is therefore subject to the overall supervision of the IPC.(이하 생략)

번역: NPC는 이 규정에 따라 패럴림픽 용어와 패럴림픽 기호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는 권리의 절대적 소유자로서 IPC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따라서 IPC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46조(패럴림픽 등 독점적 사용에 대한 권리) ① 패럴림픽헌장 및 그 부속규칙에 따라 장애인 체육회는 국내에서 “패럴림픽, 패럴림픽 심볼(symbol), 패럴림픽 깃발(flag), 슬로건, 패럴림픽 표어(motto), 패럴림픽 휘장(embblems), 패럴림픽 주제가(anthem), 패럴림픽 게임(Paralympic Games), 패럴림픽을 포함하고 패럴림픽과 유사한 용어” 등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모든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2)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휘장(엠블렘)에는 패럴림픽 심볼이 포함되어 있음(의무사항)

[표 1]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후원사 현황

(2022. 6. 27. 현재)

연번	후원사명	후원내용	계약만료 기한
1	하나은행	년간 1억원 후원	2022년 까지
2	도요타	년간 2억5천원 후원	2024년 까지
3	노스페이스	공동피복 공급 후원	2022년 까지
4	한진관광	여행사 부문 공급 후원	2024년 까지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패럴림픽 회장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회장사업의 신뢰도 제고와 후원사 유치의 활성화 등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내실화 및 패럴림픽 홍보효과의 증대가 기대되는바,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임.

< 엠블렘 비교 >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1조의2(패럴림픽 휘장 사업) ①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문양을 말한다)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⑤ (생략)	제5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1항----- ----- -----. ④·⑤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375